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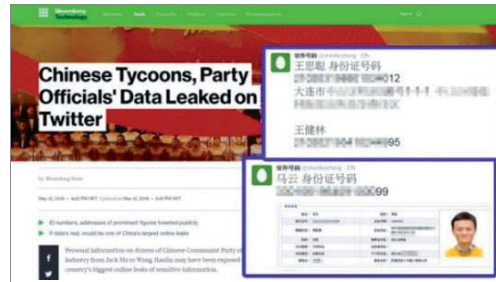
# 느리지만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문혜정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 들어가며

최근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의 급속한 발달로 인터넷과 실생활이 더욱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개인정보 매매, 누설 등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sup>1)</sup> 올해 5월에는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 등 중국 재계 거물들과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개인정보 수집 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사회적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马云) 회장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IT매체 「왕이과학」의 보도 (출처: 「网易科技」, 2016. 5. 24. “马云马化腾个人信息被曝光 截图来自公安系统”, <http://tech.163.com/16/0524/09/BNQPUVV000915BF.html>)

1) 2011년 12월 21일 중국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CSDN(중국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에서 5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어 중국 내 인터넷 토론 사이트인 “천애”에서도 4천만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유출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복수의 결제 사이트의 사용자 계정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건의 주요 원인은 사이트를 관리하는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지 않은 데 있었다. 또한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패스워드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개인 정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도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sup>2)</sup> 다만, 헌법 이하 민법, 형법, 행정법 및 성령 혹은 지방성 규칙 등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이 산재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체계를 이해하려면 각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와 내용, 벌칙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동향과 입법 현황, 지금까지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령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 1) 헌법

중국헌법 제38조는 “중국 국민은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민들을 모욕, 비방, 무고, 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상술한 권리 보호를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법학연구소가 국무원 관련 부문의 위탁을 받아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 의견판) 및 입법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08년에 국무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헌법 제40조는 “통신의 자유와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의 안전이나 범죄수사상의 이유로公安기관이나 검찰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한 검사를 할 경우 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로든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sup> 동조는 국가의 안전이나 범죄 수사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통신의 비밀)를 원칙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조항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라이버시권을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 2) 민법

중국 민법상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권(隱私權)으로서 일정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민법총칙 제101조는 “국민, 법인은 명예권을 향유하며 국민의 인격 존엄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모욕, 비방 등의 방식으로 국민, 법인의 명예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또 제120조는 “국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에 침해받은 경우, 침해정지, 명예회복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조례에서도 헌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전기통신조례 제66조 통신가입자의 통신사용 자유와 통신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보안 또는 형사범죄조사를 위해 公安기관, 국가안전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법률규정 절차에 따라 통신내용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 이외에 조직이나 개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통신내용에 대해 검사해서는 안 된다. 통신사업자 및 직원은 타인에게 통신가입자가 통신망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정보 내용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sup>4)</sup> 위 조항들은 헌법 제38조가 규정하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민법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개인정보의 침해행위와 관련한 민법상 구제조치의 발동은 소송의 형식을 취해야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 권리침해책임법<sup>5)</sup>은 “민사권익을 침해한 자는 법률에 의거해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사권익에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통

칙 및 권리침해책임법은 개인정보를 프라이버시권(隱私權)으로서 보호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권(隱私權)의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는 네트워크 사용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해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네트워크 사용자 및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트워크 사용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은폐,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특히,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접수한 이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손해의 확대 및 해당 네트워크 사용자의 피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권리침해책임법은 행위자가 과실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법률에 근거하여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 자신이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권리 침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점과<sup>7)</sup>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민사상 권익을 침해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sup>8)</sup>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988년 4월 2일 ‘중국 민법통칙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문제에 대

4)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가 1993년 8월 7일 공표한 ‘명예권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문제와 해답(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名誉权案件若干问题的解答)’에 따르면 공인 또는 법인이 명예권을 침해당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자는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공인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가해자의 과실의 정도,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 이처럼 최고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이 재산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

5) 권리침해책임법은 민법전 전 9편중 1편으로서 2002년 12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회 회의에 초안이 제출되었다. 그 후, 약 1,200조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민법전에 대한 심의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물권법과 함께 개별 입법이 진행되었다. 2008년 12월부터 새롭게 심의가 개시되어 2009년 11월부터 한 달간 공개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9년 12월 26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6) 권리침해책임법 제2조 이 법에서 의미하는 민사권익이라 함은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영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의 권리, 혼인자유권, 후견권, 소유권, 용역물권, 담보물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發現權), 주주권, 상속권 등 인신에 관한 권리 및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포함한다.

동법 제3조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권리침해인에게 권리침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7)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6조

8)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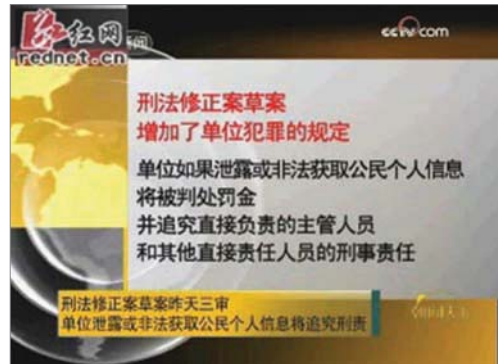
한 의견(시행)의 통지<sup>9)</sup>를 공표하였다. 통지의 내용에는 “서면, 구두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 비방 등의 수단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공민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 3) 형법

종래의 중국형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단지, 제252조에 “타인의 서신을 은닉, 폐기, 또는 불법으로 개봉하여, 공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위가 중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하여, 우편물 및 이메일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2009년 2월 28일 제7차 형법개정<sup>10)</sup>을, 2015년 8월 29일 제9차 형법개정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먼저 형법 제7차 개정에서는 국가

기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여 판매 및 제공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비밀 준수를 의무화하고 관공서, 금융기관, 통신기관, 전화, 교육 및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그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혹은 위법하게 제공하는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했다.<sup>11)</sup>



▲ 중국 정부가 형법 7차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판매·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중국 공영 채널 CCTV의 보도내용 (출처: 「湖南红网」, 2009. 2. 26. 「视频」单位泄露或非法获取公民个人信息将追究刑责”, <http://health.rednet.cn/c/2009/02/26/1715331.htm>)

2015년 형법 제9차 개정에서는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혹은 불법으로 제공하는

9) 1988年 1月 26日 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讨论通过, 最高人民法院印发《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试行)》的通知

10) 중화인민공화국형법수정안(7)의 공포 및 시행  
2009년 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형법수정안(7)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10호를 통하여 공포되어 동일자로 시행되었다.

11) 중국의 개정 형법 제253조 1항

국가기관 또는 금융·통신·교통·교육·의료 등 단위(기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공민의 개인정보를 국가 규정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이나 구금, 벌금형에 처한다.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sup>12)</sup> 형법 제 9차 개정 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거부 혐의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인데, 동 조항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① 불법 정보가 대량으로 확산되거나 ②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어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였거나 ③ 범죄 증거가 훼손되었거나 ④ 그 외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구금에 처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sup>13)</sup>

형법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은 개인정보의 누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단체뿐 아니라 공적 기관 등의 직원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앞서 본 형법 조항들은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와 관련해 처음으로 형사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형법에 신설한 개인정보 보호조항들이 조문 자체가 매우 간단하고 법 적용 대상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아우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sup>14)</sup> 나아가 형법상 규정은 개인정보 침해를 형벌로써 규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12) 中华人民共和国刑法修正案(九)제17조

13) 中华人民共和国刑法修正案(九) 제28조

14) 예컨대, 중국정부가 형법 제7차 개정을 통해서 신설한 제253조 1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국가기관 또는 금융·통신·교통·교육·의료 등 단위(기관·기업)에 한정된다.

#### 4) 행정법

중국 정부는 1993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후 20년만에 처음으로 대폭 개정하였고, 2013년 10월 2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안을 심의가결하였다.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sup>15)</sup> 소비자권익보호법에 신설한 개인정보 보호조항들은 법률단계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한 첫 시도이며, 개인정보 사용의 규범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 정부가 소비자권익보호법에 개인정보 보호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사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 2013년 10월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정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권익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처 : CCTV, 2013. 10. 25. “中国近20年来首次修改消费者权益保护法”, <http://yueyu.cntv.cn/2013/10/25/ARTI1382687031114966.shtml>)

15)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2013 修正) (主席令第七号)

소비자권익보호법은 ①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 ② 사업자는 법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해야 한다는 점, ③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한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 ④ 사업자는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상업적 전자정보를 송부해야 한다는 점, ⑤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한 경우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도입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법률에 근거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개정 소비자보호법 제29조 1항은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합법·정당·필요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② 소비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의 목적, 방법 및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③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할 때에는 소비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④ 수집한 자료의 사용에 관한 규칙을 공표할 의무가 있으며, ⑤ 법률, 법규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규정에 위반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제29조 2항). 구체적으로 ①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의 비밀을 엄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판매 또는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누설이나 분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된 경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개정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 전자 정보를 송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제29조 3항). 사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나 청구가 없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분명히 거절을 표시한 경우에는 상업적인 정보를 송부해서는 안 된다.

넷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제50조). 사업자가 소비자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적 자유 또는 법적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를 중지한 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

다섯째,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조항이 신설되었다(제56조 9항). 개인정보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위법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위법소득이 없는 경우는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나 사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소비자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행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중 가장 실용성 높은 법률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적법성심사를 강화하고, 이메일 등 상업적 전자정보를 송부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12년 12월 28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에 근거해 총 6장 25

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신 및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규정(이하 '보호규정')을 제정하였다. 동 규정은 2013년 7월 16일 공표되어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위 보호규정은 중국에서 전신업무경영자 및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전신 서비스 및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호규정은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가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규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란, 전신업무 경영자 및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사용자의 이름, 출생년도, 신분증명서 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정 이름, 패스워드 등 단독 또는 기타 정보와 결합하여 사용자의 정보 및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 장소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제8조).

보호규정은 전신업무경영자 및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 기업이 서비스 제공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기업은 사용자 개인정보의 수집·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공표하여야 하며(제9조 제1항), ② 기업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조 제2항), ③ 기업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 목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했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제9조 3항), ④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

이외에 필요 이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⑤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 즉시 기업은 사용자의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을 중지해야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제9조 제4항). ⑥ 사용자의 민원신청 처리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유효한 연락방법을 공시하여야 한다(제10조).

아울러 전신업무경영자 및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 등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전신기구관리는 위반행위의 개선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1만 위안 이하 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 나가며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각종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독특한 입법방식에 있다.

예컨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민법통칙, 상속법, 계약법, 물권법, 권리침해 책임법 등 개별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아직까지 통합된 민

법전은 제정되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는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거듭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중국 정부의 입법방식이 꼽힌다. 중국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만큼이나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즉, 관련 개별 법률을 우선 정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검증 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인 입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법방식을 고려할 때 중국 내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기존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